# 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| 의 안 번 호 | 439 |
|---|---|

2024. 6. 11.
자치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5. 31. / 전혜연 의원 등 8명

나. 회부일자 : 2024. 5. 3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6. 11.

## 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남양주시 청소년이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청소년시설 펀그라운드 객실 이용료 감면(별표 제2호)

-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 : 100분의 30 → 100분의 40

○ 청소년시설 펀그라운드 객실 이용료 감면 신설(별표 제2호)

- 다자녀가정 중 1명 이상 청소년 자녀을 동반한 경우 : 100분의 40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○ 본 조례안은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유스호스텔인 정약용펀그라운드의 객실 사용료에 대한 감면비율을 일부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 현행 30%에서 40%로 확대하고,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율 40%를 신설하는 등 주소지를 둔 시민과 동일하게 감면율 30%인 시 단체에 대한 우대 폭을 높이고,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을 통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· 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○ 없　음

6. 심사결과

○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　음

붙임 :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